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 (찬성자 22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277 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 4. 1.

라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## 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신고의 접수·처리 조문내용과 별첨 신고서 피신고자의 정보 형식이 맞지 않아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의 조문 내용을 준용하는 한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- 가.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요건을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)의 조문을 준용하여 변경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별지 제1호서식 불법하도급 신고서와 제2호서식 신고 관리카드의 "주 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변경함(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).

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요건에 대해 관련 상위법 조문내용을 준용하고,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.

#### [표] 주요 개정사항

- 먼저,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요건을 "신고 자의 실명,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", "피신고 자의 성명·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첨부된 경우"로 규정하고 있으나.
- 「하도급법 시행령」 제10조1)는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의 신고 자로 하여금 "신고자의 성명·주소", "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 칭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", "위반행위 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"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안 제4조제1항 역시 이를 준용토록 하려는 것으로.
-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중 피신고자의 신상정보와 별지 제1호 서식 간에 주소 등에서 일부 불일치하고 같은 용어임에도 '실 명'과 '성명'을 혼용하는 등의 사소한 문제가 보완될 수 있어 바 람직하다 여겨짐.
- 다음으로, 현행 조례 별지 제1호서식(불법하도급 신고서)과 제 2호서식(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)에는 신고자의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<sup>2</sup>)에 따르면 "법률·대통령령

<sup>1)</sup> **제10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)**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<sup>1.</sup> 신고자의 성명ㆍ주소

<sup>2.</sup>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)

<sup>3.</sup>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중할 수 있는 자료

② ~ ④ (생 략)

<sup>2)</sup>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<sup>1.</sup>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 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
<sup>2.</sup>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

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 구하거나 허용한 경우", "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", "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"를 제외하고는 주 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'불법하도급 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'와 '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(별지 제2호서식)'에 신고자의 주민 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 라 사료됨.

는 경우

<sup>3.</sup>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

② ~ ④ (생 략)